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연월일	2021.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1. 12. .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지방의회 관련 법규가 일괄 개정(2022. 1. 13. 字 시행)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기록표결 및 회의록 주민공개 등이 도입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칙에 반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안 제45조제1항)
- 나. 지방의회 회의록 주민 공개(안 제52조제1항)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제84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5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제45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②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 한다.	<삭 제>
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③ ----- ----- ----- ----- ----- ----- 제1항 ----- -----.
④ 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기명투표로 한다.	<삭 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52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u>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u> <u>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u> <u>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u> <u>아니할 수 있다.</u> ② ~ ⑤ (생략) <u><신설></u>	<u>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u>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5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u> <u>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u> <u>여 발언할 수 있다.</u>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4조(회의록)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